

第222回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 3 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1年6月18日(月)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屋外廣告物等管理法中改正法律案(계속)
2. 屋外廣告物等管理法中改正法律案(계속)
3. 屋外廣告物等管理法中改正法律案(계속)
4. 屋外廣告物等管理法中改正法律案(代案)
5.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중개정법률안(계속)
6. 새마을금고法中改正法律案(계속)
7.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계속)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시의견
9. 현안보고(계속)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審査된案件

1. 屋外廣告物等管理法中改正法律案(李訓平 의원 대표발의)(李訓平·金明燮 의원 외 23인 발의)·· 2  
(계속)
2. 屋外廣告物等管理法中改正法律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원유철·추미애·박재욱·정창  
화·김성조·권오을·주진우·김찬우·김일윤·이상득·이인기·이병석·박시균·김광원·손태  
인·임인배·백승홍·박중희·조웅규·강신성일·신영국·유홍수·김진재·안대륜·허태열·강  
재섭 의원 발의)(계속)·········· 2
3. 屋外廣告物等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2
4. 屋外廣告物等管理法中改正法律案(代案)·········· 2
5.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중개정법률안(李相培 의원 대표발의)(李相培·李康斗·朱鎭吁·尹榮卓·柳  
興洙·徐廷和·朴是均·李海鳳·林仁培·金東旭·金鍾河·金一潤·朴在旭·朴承國·權五乙·姜  
在涉·朴燾太·白承弘·安澤秀·朴柱千·朴憲基·崔善榮·玄敬大·金晟祚·李仁基·李在昌·申  
榮國·金淇春·鄭昌和·姜申星一 의원 발의)(계속)·········· 2
6. 새마을금고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2
7.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강성구·권오을·김경천·김근태  
김명섭·김성순·김성호·김영환·김원웅·김일윤·김희선·문석호·배기선·심재권·오세훈·  
유재건·윤철상·이미경·이성현·이종걸·임종석·임채정·장성민·정동영·정동채·정범구·  
정세균·천정배·최용규·추미애·허운나·현경대 의원 발의)(계속)·········· 2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시의견·········· 9
9. 현안보고(계속)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

(14시19분 개의)

○委員長 李龍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국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鄭求福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屋外廣告物等管理法中改正法律案(李訓平 의원 대표발의)(李訓平·金明燮 의원 외 23인 발의)(계속)
2. 屋外廣告物等管理法中改正法律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원유철·추미애·박재욱·정창화·김성조·권오을·주진우·김찬우·김일윤·이상득·이인기·이병석·박시균·김광원·손태인·임인배·백승홍·박종희·조웅규·강신성일·신영국·유홍수·김진재·안대륜·허태열·강재섭 의원 발의)(계속)
3. 屋外廣告物等管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4. 屋外廣告物等管理法中改正法律案(代案)
5.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중개정법률안(李相培 의원 대표발의)(李相培·李康斗·朱鎭吁·尹榮卓·柳興洙·徐廷和·朴是均·李海鳳·林仁培·金東旭·金鍾河·金一潤·朴在旭·朴承國·權五乙·姜在涉·朴燻太·白承弘·安澤秀·朴柱千·朴憲基·崔善榮·玄敬大·金晟祚·李仁基·李在昌·申榮國·金淇春·鄭昌和·姜申星 의원 발의)(계속)
6. 새마을금고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7.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강성구·권오을·김경천·김근태·김명섭·김성순·김성호·김영환·김원웅·김일윤·김희선·문석호·배기선·심재권·오세훈·유재건·윤철상·이미경·이성현·이종걸·임종석·임채정·장성민·정동영·정동채·정범구·정세균·천정배·최용규·추미애·허운나·현경대 의원 발의)(계속)

(14시20분)

○委員長 李龍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건별 명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오늘 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 元裕哲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元裕哲 법안심사소위원장 元裕哲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는 지난 제220회 임시국회 기간 중 4월20일과 24일 양일간 鄭文和 위원, 李秉錫 위원, 李元昌 위원, 全甲吉 위원, 秋美愛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이번 회기 중인 6월15일과 6월18일 閔鳳基 위원, 李秉錫 위원, 李元昌 위원, 全甲吉 위원, 秋美愛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당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들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의 대체토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주요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하는 등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20일 李訓平 위원, 2000년12월5일 李相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2000년12월30일 정부가 제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관리업무를 시·군·구의 사무로 이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범위를 광고물의

제작, 대행업 등을 포함시켜 확대하고 둘째,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대상에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와 관리자를 포함시켰으며 셋째,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넷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는 등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23일 李相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률안에 대하여는 빈집철거비용 및 보상비에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자금은 정부가 조성토록 하고 개정안 중 빈집철거비용 및 보상비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운영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중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경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그리고 감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향상하고 회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에 대한 경영지도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입법체계에 맞도록 삭제하고 둘째, 안 제23조제5항에서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고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사회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이사의 표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현행과 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셋째, 안 제19조제1항단서에 이사장의 임기를 3기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기득권보호와 급격한 제한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부터 적용토록 하였고 넷째, 기금이나 명칭으로 법 적용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금자보호기금을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변

경하였으며 기타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재 법정기념일로 되어 있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측 설명을 들은 다음 각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고로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에 대한 정부측의 의견은 한글날의 중요성은 인식되나 국경일의 근간변경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민주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안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그동안 계속 계류되어 왔으나 동 위원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입법시기의 적절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權泰望委員 權泰望 위원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임원의 임기문제는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신용협동조합법의 임원임기에 대해서 한 장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97년말에 임원임기를 개정했는데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지금 새마을금고의 신용을 확고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기제한도 하고 또 연임제한도 하는 식으로 법을 고치는 와중에 다른 것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하는 겁니다.

○權泰望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우리 국민 중에서 가장 서민들

이 이용하는 은행이라면 은행이라 할 수 있는데 신용협동조합법과 새마을금고법의 법률개정을 보면 죽 비슷한 시기에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97년12월에 어디에서 제거했는지는 몰라도 두 군데까지는 임원임기가 3년으로 신용협동조합하고 새마을금고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임기의 어떤 제한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97년12월에 새마을금고법에 보면 이사를 4년으로 1년 올렸어요. 그리고 감사는 3년 그대로 갖고 그리고 임기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 달 뒤인 98년1월의 신용협동조합법을 보면 이사 및 감사를 똑같이 4년으로 했어요. 그리고 임기를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신용협동조합법은 그대로 갖고 왔고 이번에 새마을금고법에 임기규정을 뒤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계속 재임 3년, 쉽게 이야기하면 12년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번 쉬고 또 12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법을 갖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간단히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한 번 통과되면 고치기도 쉽지 않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 법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렇게 급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의 이 개정안은 다음 회기 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자료도 좀더 검토해 보고 정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임기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새마을금고법의 경우 이사 4년 감사 3년으로 97년12월에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론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는 이어나 감사기간이 같습니다마는 다른 데에서도 통상 이사와 감사의 기간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관례에 따라서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꼭 같이 한다고 해서 크게 어폐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權泰望委員** 그러면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상호신용금고나 거기에는 보통 감사를 임명하지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법이나 신용협동조합법의 임원은 전부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의 임기 4년

하고 감사임기 3년이면 그 4년 동안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거를 두 번 치러야 돼요. 무슨 특별하게 감사임기를 1년 줄여 가지고 쓸데없이 대의원들에 의해서 이것을 할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선출을 안하고 상호신용금고처럼 임명을 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는 것은 이번 회기에 임기규정은, 새마을금고법의 임기규정만큼은 다시 좀더 심도 있게……

○**委員長 李龍三**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훈평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동 제2항 이상배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위원회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상배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농어촌추진책개량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방금 權泰望 위원으로부터 이사와 감사임기에 관한 의견진술이 있었습니다. 權泰望 위원의 의견진술과 함께 이것은 법안소위에 재회부해서 다시 검토한 뒤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자 하는 안을 제안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秋美愛委員** 그 임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지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수정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신탁법에, 다른 법은 또 거의 신탁법이나 이런 것에 맞췄어요, 책임부분과 감독권문제 이런 것도요. 그렇다면 하나의 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를 앞으로 제대로

효율적인 감독도 하고 책임성도 강화하고 이쪽으로 가는 면에서 임기의 문제도 논의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역시 모델이 되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맞춘다 해도 가히 무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 제19조를 이사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다른 항을 달든지 부가해서 그 법문안을 우리 수석전문위원들이 봐주시면 되는데 부칙에 넣든지 해서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고 하면 현재 임원들에 대한 기득권도 보장해 주고 다만 이것이 계속 연임됨으로 인한, 한번 쉬고 또 재신임 얻어서 다시 연임됨으로 인한 폐단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현역들은 어느 정도 보호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 수정안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李龍三 그러면 소위에 재회부하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權泰望 위원이 의견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수정해서 통과시키자는 말씀이지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權泰望委員 새마을금고 53조 연합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법에는 회장은 임기 4년 하고 연임한다고 되어 있고 임원진에 대해서는 임기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에 보면 모든 임원이 임기 4년이고 1차 연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손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토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나름대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까지 다 손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연기를 신청한 것입니다. 제19조 하나만 해당되면 지금 秋美愛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만 이 문제까지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정부측 의견은 어때요? 이것이 급한 것입니까?

○行政自治部次官補 趙泳澤 차관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라는 것은 주민자율조직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신용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율조직이기 때문에 임기나 연임조항은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 오던 것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농업협동조합을 예로 들면 이사 임기가 4년이고 감사는 3년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꼭 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는 형편이고 또 이사의 경우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연

임제한이 없습니다. 연임제한이 없는 이유는 이사는 상근이 아니고 또 보수를 받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민자율조직이기 때문에 연임제한까지 할 경우에는 너무 경직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임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은 그동안 저희 부처에서 육성해 오거나 관리해 온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입법취지를 가지고 제한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꼭 같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權泰望委員 그러면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봉급은 안 받아도 업무추진비는 받지요?

○行政自治部次官補 趙泳澤 단위금고의 이사는 업무추진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泰望委員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의 임기보다 이사장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行政自治部次官補 趙泳澤 그래서 이사장을 이번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權泰望委員 이사장의 제한을 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行政自治部次官補 趙泳澤 3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權泰望委員 12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쉬고 다시 또 12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법을 개정할 특별한 이유가 됩니까?

○行政自治部次官補 趙泳澤 계속 재임을 3기 이상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權泰望委員 12년 하고 4년 쉬고 또 12년 한다는 것은 지금 신용협동조합은 그것을 떠나서 연임조항이 바로 들어가 있고 투명성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새마을금고선거가 가장 타락된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선거와 다른 선거가 제대로 안됩니다. 여기 구성원들이 거의 4년 동안에 교체율이 20% 정도밖에 안돼요. 그리고 주로 통·반장들인데 이 선거때문에 지방자치 구의원선거보다 더 골이 깊을 정도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기규정이 중요하고 임기제한규정도 중요한 것이예요.

○行政自治部次官補 趙泳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가 2,000여개 조직이 있는데 예컨대 대도시의 아주 대형화된 새마을금고에는 일부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농촌이나 중

소도시나 중소기업의 새마을금고는 또 반드시 그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權泰望委員** 양상이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우리 서민들의 금고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역할이 차관보께서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역할이나 이사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일반 사금융은 영업을 해서 수신고도 늘리고 하지만 이것은 동네 계들을 모아서 어려운 데 보태주는 소소한 금융입니다. 그러면 이사장의 역할이나 감사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그 정도면 취지는 안 것 같고, 어떻습니까?

鄭文和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文和委員** 이번 회기에 6월20일부터 27일까지 위원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통과시키면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소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龍三**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출한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심사 검토를 위해서 소위에 재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辛基南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秋美愛委員** 소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합치를 못 보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기념일 중에는 공휴일인 기념일이 있고 단순히 공휴일이 아닌 기념만 하는 기념일이 있는데 한글날은 전 세계적으로 문자로서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반면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가 그 가치를 좀 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 보다 또 단순히 공휴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4대 국경일이 있습니다마는 한 차원 더 높여서 국경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경일은 광복절, 개천절, 3·1절, 제헌절이 있는데 광복절이나 3·1절의 경우는 일

제로부터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해방도 물론 우리 순국선열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세계정세 가운데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글날을 국경일로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축제분위기의 국경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운을 펴고 21세기에 우리 문자의 과학성을 세계만방에 알린다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국경일로 차원을 높여보자라는 그런 취지라면 마땅히 4대 국경일 속에 이것도 포함해서 5대 국경일로 전 국민이 하나의 축제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염원하고 적극 찬동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李秉錫 위원님.

○**李秉錫委員**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위에서 여기에 결론이 나지 않은 내용을 소위로서 결론을 내리기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또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秋美愛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경일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한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국경일로 하게 될 경우에 관련되는, 수반되는 주변의 또 다른 고려사항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래서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위원들 중에서 소위위원 몇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려서 상임위로 회부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더 높고 깊은 고견을 다시 한번 듣고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담아서 소위로 재회부가 되면 소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문제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미 소위에서 충분히 말씀들을 개진하신 秋美愛 위원님은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전제에서 한번 더 문제제기 겸 찬성발언을 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소위에서 상임위원회 전체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한글날 국경일 지정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秋美愛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입장이나 일부 위원들의 의견 중에는 10월에 국경일이 10월1일, 10월3일, 10월9일 이렇게 이어지는 공휴일 연장이 말하자면 전체적인 국경일 조정숫자나 일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정부 측의 의견 가운데는 국경일로 되어 있던 것을 국경일에서 제외한 몇 년 전의 취지 자체는 경제활동이나 또는 경제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휴일로 되어 있던 것을 빼고 추석연휴를 하루 늘렸던 그때의 상황과 어떤 균형을 맞추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정부 측 얘기 가운데 하나는 자기나라 말 글에 대한 국경일 지정과 기념일과 공휴일을 갖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정부 측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양측의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폭넓고 또 깊은 고견을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龍三 또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熙 위원님.

○朴鍾熙委員 정부 측에서 법안심사소위에 한글날 국경일에 관련해서 나오셨던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좀 나와 주세요.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논리의 가장 중심이 생산성 문제지요?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반드시 그것은 아닙니다.

○朴鍾熙委員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사실 그렇습니다. 한글날을 최초의 기념일로 정한 것이 정부수립이후 49년6월입니다. 그리고 국경일을 제정한 것이 49년 10월입니다. 그때도 국경일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날의 중요성은 민족이 경하해야 할 일이지는 하지만 그때 국경일은 4대 국경일로서 건국과 개국에 관련된 것으로 국한해서 차별성을 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자는 것은 아무리 중요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경일 제정의 건국 제헌의회에서 정한 것의 틀을, 기저를 바꾼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니냐 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朴鍾熙委員 지금 일본에서 교과서 왜곡하는 이

런 세계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그런 영향들이 우리들 국민들 가슴속에 공분을 느끼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그 부분에 사실……

○朴鍾熙委員 아니 제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지금 국경일에 대해서 개천절이 국경일 10월3일로 정해져있지만 이것이 근거가 있는 날입니까? 사실 이것 근거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 식의 논리로 따진다면 국경일이 4일인데 그중에 개천절은 하늘이 그날 열린 날도 아니고 개국한 날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한글날은 정확하게 반포일을 10월9일로 계산을 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언어를 창제한 날을 국경일로 삼은 유례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언어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朴鍾熙委員 거의 없습니다. 독창적인 어떤 문자를 발명한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빛나는 전통을 하루 국경일로 삼아서 그날을 되새기는 것을 산업생산성문제로 따진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130일 내지 140일이 정도를 쉬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나라는 국경일을 포함해서 또 성탄절, 석가탄신일 이런 등등의 공휴일을 포함해서 연중 13일인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65일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루 쉬는 것을 생산성 운운한다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에 또 민족정기선양에 대단히 듣기 민망한 논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도 어차피 이런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서 우리가 본회의로 회부하는 이런 문제들을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계속 끌다가는 다른 일본이라든가 우리 민족정기를 우습게 아는 나라에서는 이런 논의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웃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또 다른 위원님, 朴宗雨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朴宗雨委員 국경일로 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朴鍾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丁

차관 답변이 1949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가 개국과 건국에 관련된 것은 국경일 차원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른 한 등급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한글날을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봐 가지고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 아니냐, 소위 우리의 전통적인 그리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우리 나라 말에 대한 소위 독창적인 말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자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이것을 후손들에게라도 계속해서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것을 남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경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경일은 반드시 놀아야 된다는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경일로 하면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더니 국경일은 공휴일이라는 것이 명백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취지를 살리는데 그러면 꼭 놓고 하루를 기념으로 해야 하느냐 그래서 좀 다른 안을 생각하자면 기념일 정도라도 해서 꼭 국경일로 하지 말고 기념일 정도로 해서……

○**委員長 李龍三** 지금 기념일입니다.

○**朴宗雨委員** 지금 그냥 한글날로 되어있지요. 지금 국경일로 차원을 높이다 보니까 꼭 놀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국내적인 상황에 비추어볼 때에 꼭 그러한 반대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한 등급 낮추면 어떤 다른 대안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 국경일 하루를 더 추가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정부 측의 얘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예견되는 것이 주 5일제 근무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이 숫자가 추가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아까 鄭文和 위원 말씀대로 한 주 정도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한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李龍三** 鄭文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鄭文和委員** 이것이 아마 위원들한테 투표를 하면 반대하는 의견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만들면서 신중하게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국경일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개

념도 바뀌어져야 되고 또 기념일이라는 것이 기념을 제대로 해야 되는 날인데 놀아버리면 기념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 취지 자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찬반이 사회 속에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라도 한 번 열어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龍三** 秋美愛 위원님 말씀하세요.

○**秋美愛委員**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청회가, 사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국경일과 공휴일 지정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러운 문제처럼 인식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 문화관광위원회 쪽에서나 법안 발의를 한 여러 의원들이나 외부의 한글학회에서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문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수 없는 공청회를 많이 거쳐서 정말 이것이 요사이 비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좋은 희소식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인 것 같고 제가 요새 네루가 지은 ‘세계사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은 1930년대에 집필이 된 것이니까 우리가 일제로부터 속박을 받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네루가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겠지만 역시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문화권으로서 중국 문명권으로 분류를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그 문화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 대해서 네루 자신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 하면 중국문자를 수백 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그 나라의 말을 그대로 표현하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를 발명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제하의 어두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식민지국가로서 오명을 뒤집어쓴 그런 시대였지만 네루가 알아주는 정도로, 그 문자만으로 세계사에 우리의 자존심을 평가받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한자로 써서 다니다가 외국에 나가면 그 명함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럴 때 가끔 불현듯 느끼는 것이 기왕 이때에 영문표기 다음에 표시된 것이 한자가 아닌 우리 글이었다면 얼마나 큰 외교가 되겠는가?



차관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자를 가지고 국경일로 정한 나라가 있느냐에 대해서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대체로는 영어를 모방한 로마식 알파벳이거나 또는 중국의 문자에서 약간 변형시킨 문자 또는 이집트식 설형문자 그런 문자를 세계 3대 문자권으로 분류를 한다면 이 한글이라는 것은 유례가 없는 정말 독창적이고 우수한 문자입니다. 우리가 3·1절 만세 부른 것도 국경일이예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자존심 한 번 외친 것도 국경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독창적인 문자를 발명한 민족으로서 문자를 가지고 국경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문화축제의 장을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龍三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委員長 李龍三 예.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팽팽한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차관이 한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마디만 첨언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한글의 우수성을 모르는 우리 국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의 위상을 꺾는 발언을 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경일이 아무래도 제헌 의회에서부터 깊은 생각을 갖고 만들어놓은 역사성과 그런 하나의 뜻을 갖고 있고 개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의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한글날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념일이 되었건 국경일이 되었건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한글을 사랑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다른 민족도 우리 한글을 쓸 수 있도록 넓히고 홍보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면서 한글에 대한 의미를 국민들의 폐부 속으로 더 깊이 홍보하고 교육하면서 동시에 형식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더 명실상부한 훌륭한 한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경일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음으로써 오히려 우리 한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애국심 차원에서 더 높게 퍼뜨리는 마치 우리의 옛날 전통문화를 현창하듯이 한글도 우수성을 현창하는 차원의 홍보교육을 더

깊게 하면서 이것을 좀더 늦게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지금 다섯 분 위원님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글날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고 있고 또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크게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진짜 고뇌하면서 깊이 연구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한 세 분 계신 것 같고 여태 고뇌를 많이 해왔으니까 이제는 좀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한 두 분에서 세 분 그래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루 이틀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달 말까지 또 국회가 열리니까 다시 좀더 연구를 하셔서 회의를 한 번 더 하지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의견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법안심사소위가 이 안에 대해서 전체회의 의견을 개진을 받고 다시 또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전체회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 의견제시의견

(15시05분)

○委員長 李龍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시의견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 중에서 동자문회의 사무총장의 직급을 현행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정무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 등으로서 정부조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온 법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朴奉國**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법  
중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의 변화  
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의 효율적 수  
행을 위하여 자문회의의 기능의 재정립과 운영상 미  
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는 내용의 주  
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무처장의 직급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정무직으로 조정하고 그다음 업무  
협조 관계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무처장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정무직  
으로 개편하는 데 대하여 보면 현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무처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 자료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1년4월 신설 당시에는 정무직  
2인,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을 각각 두어 운영하여  
왔으나 98년2월 제1차 정부조직개편 시에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개편되면서 정무직 2인이 폐지되었  
고 99년5월 제2차 정부조직개편 시 다시 독립기구  
인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로 환원하였으나 작은  
정부구현을 위하여 사무처장의 직급을 정무직으로  
하지 아니하고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  
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처장의 직급이 신설 당시 장관급  
정무직에서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관계에 있  
어서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으로 조정된 직급의 상향조정은 직급  
상향을 요청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 연쇄적인 파급  
이 있게 되어 정부조직관리기조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무처의 주요기능이 자문회의의 운영 및 자문  
위원 활동지원 등으로서 그 업무의 대부분이 다년  
간 행정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또한 업무처리가 정  
형화된 행정적인 기능임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사무처장의 정무직으로의 전환은 바람직하지 아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업무협조 관계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보면 현재 업무협조 관계기

관은 국가기관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안에서와 같이 업무협조 관계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의 장을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위원회에서 미리 검토를 마치고 오늘 전체회의에 상  
정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宗雨委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설립할 당  
시부터 국가적으로 봐서 그 시대에 아주 걸맞는  
여러 가지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체제가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요즘 좀  
위축됐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연혁을 보면 사무총장, 사무처  
장, 장관 차관급 소위 사무처직제를 바꾼 지가 2년  
도 채 안됐는데 사무처장을 차관급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지금 1급 가지고 안되는 일이 있는지  
나는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사무처장을 차관  
급으로 하게 되면 그 밑의 수하가 조금 또 달라져  
야 됩니다. 처장직급만 1급에서 차관급으로 했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거든요. 차관급으로 해놓으면 밑  
의 조직이 자연히 연쇄적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되  
고 확대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  
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직원들에  
대한 파견근무 같은 것 이런 것을 국가기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을 받는 이  
러한 문제는 이것이 처음부터 국가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한 것은 이것은 뭐라고  
그렇까,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  
니다마는 3공식 5공식 발상이에요. 사실은 국회도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 판인데 민주평통에서,  
국가기관에서까지 공무원을 파견받아 가지고 어떻  
게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당초의 국가기  
관의 장까지는 기왕 있는 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  
는 것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鄭文和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文和委員 일단 우리 위원회 의견은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朴宗雨 위원께서도 반대하는 의견이시지요?

○委員長 李龍三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鄭文和委員 그래서 혹시나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정무직이 아니라서 위신을 깎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의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다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하는 일들이 주로 의사국 역할입니다.

의사국 역할이니까 그 의사국 역할에서 차관급으로 두어서 밑에 1급을 두고 이렇게 나간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반대의견을 좀더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제시의 시일이 촉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동 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또 위원님들이 의견제시한 것을 여야 간사위원님들에게 문안정리를 위임해 드려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넘겨주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龍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크고 작은 재·보궐선거가 연이어 실시되고 있어서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선관위의 총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참으로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나라 선거사상 매우 중요한 4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선거를 위하여 충분한 사전준비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선거업무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명선거실시를 위해서 올바른 선거를 위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하는 동시에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철저한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선거가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어 선거관리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합심해서 맡은 바 직무에 헌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중앙선관위가 정치관계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총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면서 선관위 측의 개정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존경하는 李龍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국정심의에 진력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항상 우리 위원회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에 7개의 구·시·군의 장 선거와 20개 선거구의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선거를 관리한 바 있으며 현재 대구와 인천의 교육감선거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내년의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치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우리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내년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흠 없이 관리할 수

9. 현안보고(계속)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委員長 李龍三 의사일정 제9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올해는 전국규모의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마는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예정자들이 벌써부터 지지기반확보를 위하여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행사에 금품을 지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은 발생초기에 바로 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속성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보다 광범위하고 실효성 있는 신고 제보망을 구축하고 정당입후보예정자들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면서 조그마한 불법선거운동의 징후라도 발견되면 즉시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초동단계에서부터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의 조기과열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의 실현은 결국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가 앞장서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국민의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명선거에 뜻을 같이 하는 종교, 시민,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벌인 위법행위 배격운동과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하반기부터는 더욱 대폭 강화해 나갈으로써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감시하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의 각종 크고 작은 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치루어질 때 공명선거기반은 더욱 다져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공공단체와 각급 학교의 선거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선거안내 및 지원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민방위 교육 때마다 또 지역별 고유축제 등 행사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유권자의 시민의식고양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인삼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장선거에 우리 위원회 직원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하고 불법선거운동단속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각종 조합장 선거가 내년에 실시될 공직선거의 공명선거분위기를 흐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내년의 양대 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선거, 정치자금, 정당사무관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관계법개정건의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년 선거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대폭 수용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 양대 선거를 통하여 국민과 함께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를 이루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깊이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위원회의 간부를 인사드리겠습니다.

李勳相 사무차장입니다.

丁一桓 선거관리실장입니다.

安基奭 기획관리관입니다.

洪淳斗 정당국장입니다.

任明宰 선거관리관입니다.

李圭鍵 홍보관리관입니다.

吳璟華 연수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기획관리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企劃管理官 安基奭 기획관리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대통령·지방선거 공명선거 기반조성, 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관리, 교육감선거관리 및 공공단체선거 지원, 제16대 국회의원선거소송 진행상황, 정당·후원회 관련사무처리 및 지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대통령·지방선거 공명선거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잠깐만요, 업무보고 내용이 많은데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해주세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企劃管理官 安基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준비의 중점추진방향으로는 국민의 정치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법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입체적인 감시·단속실시로 사전선거운동을 근절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엄정조치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명선거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각종 기관, 단체 등의 교육·집회를 이용하여 공명선거강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인쇄물·시설물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생활주변선거를 바른선거로 이끌기 위해서 공공단체·노동조합 등 각종단체와 학교의 선거과정을 지도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바른선거의식 함양을 위한 강의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른선거 실현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연수원을 통하여 시민·사회단체 간부 및 언론사 기자 등 여론주도층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특히 북한 이탈주민 121명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선거제도와 주권의식 함양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언론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참여하에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중등학교 사회과목 담당교원 79명을 대상으로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선거교실 운영 등 체험학습을 위해 선거에 관한 사진전시·글짓기·퀴즈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고 중·고등학교 사회과목 교과서 개편의견을 작성하여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교과서 개편 시 반영되도록 추진하였으며 사회과목부교재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의 날을 이용해서 신생유권자에게 민주시민의식고양을 위해 성년축하 홍보 CD를 제작 배부하고 신문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시·단속망 구성은 양대 선거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존의 신고·제보·감시체제를 일체 정비하는 한편 종교·시민·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사전선거운동 예방을 위해 정당·후보자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후보예정자의 행사일정·활동상황 등을 파악하여 관련

위반사례를 사전에 안내하여 준법활동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사전선거운동 감시·단속을 위해서 위원회직원, 신고·제보요원으로 감시·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단계별로 단속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시·단속활동은 지방선거 입후보자에정자와 관련된 각종단체, 사조직, 모임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로 위법행위 확산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한 중점 감시·단속 대상은 방송·신문·유선방송·자치단체 발행 홍보물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와 각종 지역주민행사에 기념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의 경우에는 각종 지역주민 행사 등에 편승한 상시제한 위반행위, 정당활동·의정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중점 감시·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선거 관련 단속실적은 총 516건으로서 홍보물·선전물 이용과 금품·음식물 제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시제한행위 홍보 및 단속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시제한행위 홍보는 정치인에게 찬조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는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고 공명선거 추진단체와 연계한 경조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하고 시민·자생단체 등에 찬조요구 자제를 요청하는 공한을 발송하는 한편 현수막 게시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고유축제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시제한행위 감시·단속실적은 총 939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 관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6일 실시한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전국적으로 총 27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후보자의 평균경쟁률은 기초자치단체장이 3대 1, 광역의회의원이 2.8대 1, 기초의회의원이 2.4대 1이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단체장 선거가 평균 28%, 광역의원선거는 25.6%, 기초의원선거는

36.2%였으며 단체장 선거의 경우 최고투표율은 전북 임실군으로 67.5%, 최저투표율은 부산 금정구로서 16.8%였습니다.

상반기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을 위해서 전 임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감시·단속활동을 총력 전개한 결과 총 9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보궐선거의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교·시민단체와 연계한 캠페인, 서명운동, 결의대회 등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TV, 신문 등 언론매체, 포스터, 전단 등 인쇄매체, 현수막 시청각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투표편의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급 지체장애인에겐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부채자신고안문과 신고서를 송부하였으며 투표소에는 안내도우미를 배치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선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등록장애인 투표율은 32.0%로서 전체평균투표율 28.2%보다 3.8%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평가해 보면 일부 단체장 선거에서 중앙당 차원의 과도한 지원으로 과열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질서 있고 차분하게 진행되었으며 유권자의 관심저조로 투표참여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재·보궐선거 시 투표참여 제고를 위하여 후보자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거소투표를 확대하며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정치관계법개정건의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감선거 관리 및 공공단체선거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선거는 지난 4월19일에 실시했으며 후보자수는 7명이었습니다.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서 후보자, 선거인, 교육청, 학교 등을 방문하거나 공한을 발송하여 위법사례 안내와 준법선거를 촉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중점 단속한 결과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선거과정에서 교육장 등의 선거관여행위와 학교 운영위원 선출의 불공정 및 현직 교육감의 직무와 관련한 위법선거운동 시비, 선거운동방법의 제한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법규 개정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대구·인천광역시 교육감선거에 관한 보고입니다.

내일 치러질 대구·인천교육감선거의 후보자수는 대구시 9명, 인천 7명입니다. 위법행위 단속은 초동단계부터 위법행위를 고발·수사의뢰 하는 등 과열·혼탁을 예방하여 차분하고 질서 있는 선거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6월15일 현재 총 2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인삼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장선거의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조합장 선거가 내년에 실시될 공직선거의 분위기를 흐리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직원이 조합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하여 선거절차를 지도하고 선거규정 해석 자문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의 사전선거운동 단속과 병행하여 조합장선거의 위법사례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대 국회의원선거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기건수는 총 28건으로서 24건이 종결되었고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동대문구을선거구에서 선거무효의 판결이 있었던 바 판결요지는 위장전입자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의 전·출입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자 색출을 위해 구·시·읍·면의 장과 협조를 강화하고 입후보예정자의 가족·친지 등의 위장전입을 중점 감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당·후원회 관련사무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당의 회계보고는 1,215개 당부 중에서 1,175개 당부가 제출되었고 40개 지구당이 미제출했습니다.

후원회 회계보고는 590개 후원회 중에서 582개 후원회가 제출했으며 8개 지구당후원회가 미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미제출사유는 대표자 등의 탈당 또는 소재 불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된 회계보고서는 3개월간의 열람기간 동안 총 58명이 열람했습니다. 정

당보조금은 3월15일과 6월15일에 각각 지급됐으며 지급총액은 133억9,295만원입니다. 정당별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30일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선거제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고 유권자의 의사가 올바르게 선거결과에 반영되도록 하고 정치자금제도는 정치자금 조달과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당제도는 정당의 민주적인 운영과 저비용 고효율의 내부구조를 갖추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개정의견을 작성함에 있어 선거관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과 국회의원·정당, 언론, 학술·연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선관위의 현안보고와 관련해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현안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元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元昌委員 현안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13쪽의 선거무효 판결내용, 동대문구을선거구 얘기, 지금 한나라당 金榮龜 후보가 14명, 민주당 許仁會 후보가 9명 해서 차이가 5명이라는 것이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李元昌委員 그래서 득표수가 3표니까 2표가 잘못되었다 해서 무효를 내린 것이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대개 그런 취지입니다.

○李元昌委員 위장전입이 주로 친·인척만 관계된 겁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지금 현재 문제된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분들입니다.

○李元昌委員 그러면 친·인척이 아닌 경우에는 위장전입이 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문제됩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는 주로 친·인척이 문제가 됐었던 것이지요.

○李元昌委員 지난번 개원 초기에 법사·행자 연석회의에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역의원이니 만큼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의원의 경우는 위장전입이 무려 1,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재정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원인데. 기각이 되었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李元昌委員 그것과 이번 동대문구을과의 차이는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참고로 그 의원의 경우는 재벌그룹회장으로까지 있으면서 자기 회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위장전입한 사례가 드러났었어요. 제가 초기인 만큼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고 아파트 호수마다 제가 전부 방문을 해서 위장전입한 사례가 드러났었습니다. 그것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렇게 되었고 그 의원은 재정신청까지 기각이 됐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지금 위장전입이 선거무효가 되는 이유는 위장전입이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 그 투표권의 적격성이 부인되어야 되고 따라서 지금 동대문구을의 경우에는 투표권이 부인되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표차를 넘었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사례의 위장전입사례는 그당시에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李元昌委員 선관위에서도 고발을 했어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당시에 구체적으로, 위장전입 숫자가 상당히 적은 숫자로 나타난 것으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를 다시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元昌委員 그러면 앞으로 표차와 관계가 없는 위장전입은 별 의미가 없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처벌은 처벌대로 합니다마는 선거결과를 부인하는 문제는 별개로 보입니다.

○李元昌委員 그렇다면 선거무효와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위장전입을 많이 시켰던 의원은 어떤 처벌이 되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위장전입이 불법이고 그 불법행위에 관여된 자는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지요.

○李元昌委員 그러니까 제 말은 표차와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위장전입이, 그 의원의 경우 위장전입한 사례는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부분적으로요.

○李元昌委員 위장전입의 불법사례가 분명한데도 재정신청을 분명히 했는데도 기각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위장전입분야에 대해서는 선거감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李元昌委員 제가 하는 얘기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불법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나 안미쳤을 것이나 하는 문제의 판단과 그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문제는 전혀 별개로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元昌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당시 선거구 관내의 아파트 밀집지역을 다 돌았습니다. 그 세대주가 분명히 한 가구에 둘 심지어는 네 가구까지 합동으로 같은 날짜에 전입된 사례가 많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또 세대주도 분명히 그것을 인식을 했고, 선거가 끝나고 다 빠져나갔으니까요.

그러한 사실도 현 검찰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의원이 가서 확인했는데도 드러났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그것을 오리무중으로 넘겨 버리고 이렇게 친·인척 몇 명 들어온 것은 문제를 삼아서 선거무효를 시켰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선거관리를 어떤 차원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의원들한테는 무엇을 어떻게 계몽지도를 해야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먼저 예를 드신 그 지역구의 경우에 제가 자료를, 그당시에 상대편 정당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약 60여명의 위장전입의 의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했고 그중에서 대부분이 투표를 안했습니다. 실제로 투표를 안하고 지금 8명에 대해서 1심에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의 벌금이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찰에서 그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여하튼 위장전입이 선거부정의 하나의 형태로 지금 선거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이렇게 선거가 끝난 후에 결과를 뒤집을 만큼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元昌委員 일단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해서 李康來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세요.

○李康來委員 보고서 4페이지 잠깐 봐주시지요.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에서 나번의 대통령선거 사전운동예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전담반을 편성해서 2001년3월부터 4개반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내용으로서 입후보 예정자의 행사일정, 활동상황 등을 파악해서 관련위반사례 사전안내로 준법활동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입후보 예정자를 어떤 근거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밝혀 주시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입후보예정자라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의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선거인들이 그 분이 입후보할 것이다 하는 것을 주지할 수 있으면 대체로 입후보예정자라고 선거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나와 있고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대체로 입후보할 것으로 알려진 분들 중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李康來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대방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거의 어느 분이 후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나 자민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떤 분이 후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리무중 상태에 있어서 너무 이런 것들이 자의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문제제기를 해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통상 총재로서의 활동과 후보예정자로서의 활동을 구별해서 평가합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활동 하나 하나를 저희들이 보고 이것이 총재로서의 직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정당활동에 해당되는 것이나 아니면 입후보예정자로서의 선거운동에 해당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 하나의 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康來委員 그렇다면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얼마 전에 언론에서 논란이 되었던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원회인가를 가지고 공방전을 벌인 글을 보았는데 일부 주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준비한 선거준비기관이라고 평가하고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정당의 내부기구로 파악하고 있고 따라서 정당의 내부기구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일단 다른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현재까지는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康來委員 정당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체이고 아직 선거를 위한 사전선거조직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李康來委員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宗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宗雨委員 朴宗雨 위원입니다.

먼저 대사관에 나가 있는 재외공관원들과 다른 나라에 오랫동안 출장 나가 있으면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선거에 맞추어서 들어올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희망하는 것은 부재자투표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기해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아서 좀 어렵다는 것인데 일단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약 2주 가까운 시간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조금만 노력하면 주재대사를 책임자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개표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런 노력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들어가지만 노력은 해 봐야 됩니다. 100명 나가 있는 가운데 다만 몇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하더라도 공관장을 책임자로 해서 투

표에 대사관 직원은 물론이고 주변상사 파견직원들이 부재자 투표 형식의 권리행사,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사무총장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5쪽에 보면 각종 사전선거운동 단속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장의 부분에 있어서 한 두 가지 언론매체를 이용한 것이라든가 금품제공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매번 문서로 복사판으로 나와서는 제가 보기에는 실효가 없으리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밝은 대명천지에 단체장이 자기 이름으로 금품제공을 하고 지원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날 가 봐야 한 건도 안 나와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 체육회, 이장단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각종 단체들이 노인잔치를 하는데 이것이 한 두 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단체들이 전부 추렴해서 했다는데 내가 볼 때에는 시골의 새마을단체나 체육회단체가 돈이 없습니다. 합동으로 해도 돈이 없어요.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댈만한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버젓이 그런 노인잔치를 대대적으로 즐기치게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거의 다 그런 수준인데 이것이 과연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선관위는 그 기관장은 거기에 돈을 안 냈고 차값 단 돈 10원 한 장도 낸 일이 없다고 넘어가면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나중에 선거하는 과정에서 골치 아픈 사람들을 고발하는 역할밖에 할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기관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선관위 자체적으로 안되면 다른 기관과 합동으로 해서라도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시대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 사무총장 의견을 묻습니다.

세 번째로 보궐선거가 4월과 10월 두 번으로 지정되었다는데 예를 들어서 4월말쯤 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어차피 10월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불과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랬을 경우 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그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2004년도부터 시작되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면, 그때 2004년도 4월의 선거라고 보면 현직 단체장들이 6개월 전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현행법으로 보면 6개월 전에

사임을 하는데 그러면 언제 사임을 하느냐 하면 그 전 해, 2003년도 10월에 사임을 해야 되는데 4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까지 단체장 선거를 안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월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언제 가느냐, 10월로 돌아가야 되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아님니다.

○朴宗雨委員 아니, 아니라고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일단 현행법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10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4월 국회의원선거가 끝나면 그 끝난 50일 이내에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宗雨委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거만 하다가 만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또 거기다가 편법을 집어넣어 가지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또 그것만 특별히 그런 사례를 두면 안 된다 그런 얘가지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4월에, 6개월 전에 그만두어 가지고 다른 지구로, 국회의원이 되었던 다른 지구로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했다 말이에요. 떨어졌지요. 떨어졌는데 그동안 아무 단체장 선거가 없었으니까 50일 이후가 되었던 6개월 이후가 되었던 또 하면 이 사람이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이 당선이 됩니까? 그 얘기는 나중 얘기고 일단 정치, 선거에 미친 사람은 염치 불구하고 출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한 군데라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 선거풍토가 영망진창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대책 강구를 해야지 지금 현행법상으로 4월, 10월에 하는 것 이외에 총선거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6개월이 지나서 총선거 끝나고 나서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날짜를 지정해서 또 선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10월로 가지 아니하고 그 중간에 한번 선거를 다시 한다 이러는데 일단 이 사람은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17대 이후에는 우리 나라 선거사상 이런 문제가 계속 되리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秉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錫委員 李秉錫 위원입니다.

점차 선거가 상시화되고 있는 지금의 우리 나라 정치상황에 비추어볼 때 그와 같은 선거관리에 여념이 없으신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에게 우선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나머지는 전부 서면질의로 넣고 좀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선거용 선심성 예산에 대한 단속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4월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사실상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특별한 사유없이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집행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공식적으로 자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李秉錫委員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 문제에 관련한 불법선거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국회 심의에서 이 부분의 예산심의는 나름대로 엄격하게 검정하겠지만 벌써부터 이런 선심성 예산의 우려가 높다고 현저한 의심을 받을 만한 예산책정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가 요구한 농어촌도로확충사업 1,839억원,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4조7,552억원으로 전년대비 70% 인상이 됩니다. 행자부의 소도읍개발사업에 2,000억원, 교육부의 중학교 무상무교교육 확대실시가 2004년으로 잡았던 것을 2002년으로 당기는 것, 여기에 2,700억원, 산자부의 군산무역자유지역개발사업 1,105억원은 전년대비 3.5배 인상이 되고 제주 4·3항쟁위령사업비가 500억원인데 이것은 거창산청 함양의 경우 175억원에 비하면 매우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문광부의 국립남도국악원사업이 150억원입니다마는 전남 진도의 인구 4만명에 비추어 봤을 때 150억원의 문광부의 국립남도국악원사업이 적절한 것이냐?

특히 이 모든 예산들이 유교권 개발사업과 경부고속철도사업을 공사하지 않기로 한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비들이 이렇게 특정지역으로 편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민간단

채지원금이 38% 전년대비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의 국민안전봉사대사업이 10억5,000만원으로 일부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대선조직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정부 국정자료집 5억4,000만원과 KBS-TV 위성방송운영 및 인터넷 방송사업 33억원은 정부홍보성사업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의혹이 있습니다. 산자부의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에서 2000년도 연구기술개발사업 평가에서 A, B, C, D, E 중에서 가장 낮은 E급 판정을 받았는데 내년 예산에 482억원을 책정을 해서 전년대비 80억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의 국립서울과학관이전사업 259억원의 부지 공시지가의 과다책정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평당 30만원이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연구성과 권리와 지원사업 내년 150억원의 특허경비 과다계상은 시장가격보다는 2배에서 20배 가량 높은 국내특허 500만원, 국제특허 2억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제가 지금 요목으로 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전년대비 상당히 획기적일 정도로 과다책정의 의심이 높고 또 실제 이와 같은 예산책정을 과다책정할만한 기준과 객관적인 잣대에서 보면 타당성을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미루어진 사업을 2배로 당겨서 조기 실시하는 데 따르는 의혹이 있고 또 특정 어떤 사업 요목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으로 봐서 그만한 사업규모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소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산책정도 드러나 있는데 물론 이것은 국회심의과정을 거쳐서 적절하게 검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결국 이것이 선거용 선심성 예산책정이라고 의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상당한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에 내린 유권해석처럼 정부여당이 특별한 사유없이 예산을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집행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공식적인 유권해석의 기준에 맞추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가해서 한 가지 제가 문제제기 겸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이를 테면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선거소송과 관

련해서 검찰이 기소된 특정 선거소송사건에 대해서 그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결과를 검찰에서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검찰에 넘기니까? 그냥 막 줍니까? 문서수발대장에 선관위 자체에서 특정시점까지 조사한 내용을 검찰이 그 특정선거소송당사자와 관련된 부분을, 선관위 조사자료나 조사내용을 검찰이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데 관련된 선관위 보관서류를 넘겨줄 때는 문서수발과정의 기재를 통해서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런 경우에 대체로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검찰에 그것을 넘겨서 기소해 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범주 내라면 가급적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 **李秉錫委員** 선관위가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문서나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는요?

○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것이 어떤 저희한테 제보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협조를 안 해주고 있으나 위법사실에 대해서 그쪽에서 수사상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李秉錫委員** 협조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물론 그 협조의 방법에는 문서에 의해서 주고 받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구두에 의해서 협조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으로 봅니다.

○ **李秉錫委員** 그런 절차도 없이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조사한 내용의 서류들을 검찰이 요청한다고 무조건 사람이 직접 갖다줍니까?

○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무조건은 아니고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 텐데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 **李秉錫委員** 일반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혹독하게 검증을 할 테니까……

○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뭐라고 할까……

○李秉錫委員 아니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 아닙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李秉錫委員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나 수사요청을 하지도 않고 있는 특정한 선거소송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서류를 개인적으로 갖다 줄 수 있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개인적으로 갖다 줄 수는 없겠지요.

○李秉錫委員 법적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구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까마는 검찰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해주는 것이……

○李秉錫委員 정식으로 안하고 ‘그것 좀 가져 와’ 하면 갖다 주는 것인데요? 문서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도 그냥 갖다주는 것인데요? ‘이 사람 내가 조사했는데 선관위 조사한 기록이 전부 이런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인데요. 줄 때 형식이 뭐냐 말입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런 경우에 검찰에서 와서 우리 서류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李秉錫委員 아니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해줄게요.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선관위에서 다 갖다주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의 선거소송당사자를 다루고 있는 검찰청에서는 ‘다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핑퐁 속에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문서수발대장이 있느냐?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되겠습니까마는……

○李秉錫委員 일반적으로 내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일반적으로 검찰과 우리와의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방향은 서로 간에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저희나 검찰이나 같은 목적을 갖고 있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절차가 꼭 서면으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협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李秉錫委員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그 모

든 서류를 전부 다 갖다 주는 것인데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李秉錫委員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문서가 서류에 의해서 문서요청이 없는 상황에 필요한 그동안의 조사한 모든 조사내용과 기록들을 검찰에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글썬 그것은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그것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李秉錫委員 단순하게 전화로 묻는 정도가 아니고 기록 전체를 갖다 준 적이 있어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글썬 기록 전체라는 개념도 종이 한 장이 전체일 수도 있고 두꺼운 책 한 권이 전체일 수도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李秉錫委員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기관의 권한과 권리가 다른 부분의 기관과 기관 사이의 문서를 취급하는 것은 문서대장에 넣어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물론 문서로 오고갈 때 정식공문서야 문서대장에 당연히……

○李秉錫委員 그런 것 없이 그것을 갖다 주었다면 선관위 입장이 뭐냐 이것입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간의 어떤 협조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대립적인 관계일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있을 것이고……

○李秉錫委員 그러면 그것이 없을 경우는 선관위가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여부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시지요?

○李秉錫委員 답변 안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잘못된 행위인지, 잘못된 행위라고 추궁할 정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나중엔 또 보충으로 하세요.  
다음 全甲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甲吉委員 全甲吉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전선거운동 점검하시느라고 연중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의 어려움은 아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가들도 그러겠지만 선거의 당사자들, 유권자들 모두가 느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마음의 선택을 어떻게 모으냐 하는 것이 표를 얻는 사람의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선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선거법이 상당히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할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그런 조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 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나 최적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야할 길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저축이 되어 가지고 선거소송 중에 있는 모든 소송이 지금 개정된 법률안은 1년 이내에 끝나기로 되어 있지요? 아니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고개만 끄덕해 버리면 속기록이 잘 안 되니까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그렇습니다.

○全甲吉委員 그런데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소송 사건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거의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甲吉委員 제가 볼 때 선거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는 것들은 무슨 이유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글썄, 검찰과 법원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법원쪽의 말을 빌리면 출석을 잘 안해서 그렇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全甲吉委員 그런데 저는 1년 내에 소송을 마무리지으라는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이해 가는 부분의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후보당사자가

출석을 안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체포영장을 동원하면 그렇지 않은 방법들이, 소위 말하는 방탄국회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법을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준 정치인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결과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안지키고 어김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1년 내에 모든 소송을 끝내라는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법에서 1년 이내에 마치기로 규정을 했다는 뜻은 선거결과를 빨리 확정을 짓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있으리라고 보고 따라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문제점은 여전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全甲吉委員 그러면 그런 뒷받침을 해야지요. 지금 1년 내에 소송을 끝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당선이면 법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데 임기 4년 내내 끄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임기 동안 국회의원을 다하고 법은 법대로 유야무야 처리가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올바른 법 정립을 위해서는 1년 이내에 끝내야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가는데 지금 총장님 말씀은 법원에서 모든 것을 판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총장님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우신 것 같은데 아마 그 표현을 제가 간단히 빌리자면 법원에서의 문제지만 이것이 법으로 후속조치, 쉽게 말하면 1년을 어겼을 때, 법관이 어겼으면 법관이 법을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없는 것으로 지금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현재 처벌규정이란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全甲吉委員 그런 문제점들은 모든 선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님 입장에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쉽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연 재판이라는 것이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의원이라든지 이런 선출직의 임기라든지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한에 쫓겨서 무조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법관이 양

심과 헌법에 따라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이런 것의 바탕하에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한과 재판의 엄정성 이런 문제를 같이 교량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년이 지켜져야 된다, 처벌규정을 뒤야 된다고 선관위 입장만 생각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全甲吉委員**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법의 형평성,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명확히 그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한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의혹도 많아질 것이고 또 법의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총장님 입장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아보십시오. 별척조항이 없다면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겠지만 주관부처인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을 내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全甲吉委員**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전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물론 자연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단속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고 적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있겠지만 아주 고심사항이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사전선거운동 하는 것을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해야만이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상대후보들로부터 이해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단체장들의 업적홍보와 관련되어서 이것도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단체장의 업무성격이고 어디까지가 사전선거운동인 것이지요.

특히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장들이 다니면서 선심행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지 모르지만 단체장들이 구정보고를 통한다가 도정보고를 통한 홍보물 이런 것은 홍보물이나 간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단속할 것이 아니라 홍보물을 발행하는 발행처가 있고 편집위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편집할 때 반드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든지 그런 지시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범죄를 양성

하지 않고 또 방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조를 좀 구해 주십시오.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지금 현재 제도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홍보물을 발행하는 부서와 선관위가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혹 협의하다가도 문제가 있는 것을 낼 때는 우리 모르게 그것만 얼른 내가지고 문제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마는 여하튼 현재 저희들이 그런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현재에도 실질적으로 모든 간행물에 대해서 사전심의는 아닙니다마는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全甲吉委員** 그것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잘 하고 계십니다.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의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선거법 중에 크고 작은 선거법이 많이 있겠지요. 쉽게 말해서 유권자를 현혹해서 금품으로 매수한다든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선거법 중에 제일 큰 선거법이 그야말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일으켜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켜서 표를 얻으려는 이런 후보는 정말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어요. 사소하게 상대방을 비방 하나 한 것도 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지역갈등을 조작해 가지고, 허위사실유포는 있는데 허위사실유포에 지역정서는 교묘히 빠져 나와 가지고 많이 고발대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정을 해야 됩니다. 허위사실유포를 놔두고 그 안에 규정을 하든지 따로 지역감정을 건드려서 표를 얻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규정을 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법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정서를 조금만이라도 건드려서 표를 얻으려는 그런 후보가 있으면 당장 고발해서 그런 사람이 제일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좀 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그 법개정에 적극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깊이 참고해 가지고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 것은 전문가들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5월25일에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구시장 文熹甲 시장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 내용은 대구 文熹甲 시장이 대구경찰청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특강, 23일은 지역학교장, 장학사까지 다 불러서 600명을 대상으로 특강, 24일은 운전기사 300명을 대상으로 특강 등등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강 내용 중에는 거의가 자기 업적과 관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관위에서 자체조사를 했는데 10일 후 6월4일 선관위에서 자료를 배부한 내용은 ‘文熹甲 씨가 한 특별활동을 조사한 결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명선거 협조 분위기 선에서 조사하고 협조 분위기만 요청했다’고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시발점인데 이렇게 큰 불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관대하게 용서하면 제2, 제3의 엄청나게 자치단체장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것이 틀림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분한 협의하에 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어쩔 작정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대구시장의 각종 강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강의문 내용이나 강연하게 된 동기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선주자라고 일컫는 분들이 다니면서 대학원 특강이나 초청강연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나 정당활동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체장의 활동이 과연 주민복지를 위한 것이냐 선심이나 직무행위나 선거운동이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文熹甲 시장이 자기가 그런 강연회를 주선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자기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했다면 물론 사전선거운동에 가깝겠지만 그런 강연에 초대받아서 강의한 것만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전부 재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대선주자들의 강연이 많아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과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상당히 깊이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동기나 이루어진 경위와 발언내용까지도 보았

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사전선거운동까지 가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기는 좀 그런 선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全甲吉委員 경고도 안했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경고는 일단 사전선거운동이 된다는 전제하에 경고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全甲吉委員 그런데 대선주자 얘기를 하시는데 대선주자와 文熹甲 시장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대선주자들은 자기 업적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하러 가는 거예요. 강의 끝나고 나서 질문하면 답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강연을 빙자해서 자기 업적만 즉 선전을 한 사전선거운동이에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 강연 내용을 위원님에게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그것이 업적홍보나 아니냐 하는 판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설명하는 부분들과 업적홍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우리가 재단할만큼까지는 내용상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봅니다.

○委員長 李龍三 나중에 답변을 추가로 하시지요.

○全甲吉委員 이상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다음 俞成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俞成根委員 하남시 俞成根 위원입니다.

총장님께서서는 4·13총선 때 선거관리위원회 중책을 맡고 계셨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俞成根委員 자료를 보면 273명의 국회의원 중 검찰에 입건된 국회의원이 16대에 116명인데 맞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俞成根委員 그런데 6월초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내일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중요도에 따라 6개 범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소, 기소예상, 중요사건 수사, 제일 낮은 단계는 무혐의이고 그 윗 단계가 불기소처분인데 그 중에서 새로운 사실의 변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불기소대상에서 기소된 의원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의아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요직책

을 맡으셨는데 검찰에 기소된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의 중요성 정도와 선관위에서 바라보는 준거틀이 합치되는 의원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불합치되는 의원들이 더 많습니까? 순서대로 중요도를 따졌을 때 선관위에서 즉 1번부터 따진 것과 만약에 10명이 기소되었다면 그 10명과 현재 검찰이 기소한 10명이 동일한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俞成根委員 그러니까 기소된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의 중량에 있어서 선관위의 잣대와 검찰의 잣대가 거의 같기 때문에 중요도면에서 대부분 동일인이라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우리는 A, B, C라는 분이 더 많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구태여 기소하려면 A, B, C가 되어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D, E, F를 기소했다 하는 분이 더 많으신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제가 안해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기관끼리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또는 우리 기준에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俞成根委員 4·13총선이 끝난 뒤에 검찰의 중립성 문제, 편파수사가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그럴 경우에 일단 편파수사라고 가정할 경우에 그렇게 일단 기소된 의원들에게 아주 냉혹한 선거법 적용을 하는 것이, 일단 기소된 자체의 부당성 내지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 아주 현미경처럼 적용되는 것이 정의에 합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검찰 내지는 편파수사로 인한 기소가 된 자체부터 원천적인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정의에 합치되는 것인지 총장님의 가치판단을 부탁드립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결국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고 그것이 유죄냐 아니냐 여부 역시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안마다 기소여부의 타당성과 법원 재판의 타당성 여부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俞成根委員 저는 한국에 살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의 불행 중 하나가 각자가 소속된 예를 들면 건축을 할 때에는 건축법, 정치인의 경우에는 선거에 임하는 국회의원 입후보하는 모든 후보들, 건축을 한다고 할 때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대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던데 자기가 그 교회 마당에 조그마한 뭉치를 지으려고 했더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법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끔 우리 나라 법이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위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동 직원을 만났다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총장님께서서는 16대 4·13총선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4·13총선에 임할 수 있는 후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답변해 주세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제 입장에서 아니라고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俞成根委員 그것이 무슨 말씀이예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러니까 위반 안하고 선거운동하시고 당선되신 분도 저는 있으리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俞成根委員 심증적으로 그런 분이 한두 분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역으로 말해서 99.9%는 위반을 했지만 적발되지 않거나 편파수사에 의해 가지고 구체받은 사람이거나 또는 구체 못 받아서 기소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씀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俞成根委員 그러면 90%는 됩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 정도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俞成根委員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지자체선거와 관련해서 신고문제인데 지역주민들의 지역선관위에 부정선거사례를 고발하려고 해도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일종의 밀고자역할을 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분보호와 보장을 하지 않고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인 또는 고발인 진술을 실



명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신의 신분노출을 꺼려해서 고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보자의 신분보장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주민제보나 고발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 16대 총선에서 지역주민들이 제보해서 선거법 위반자를 적발해 낸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우리 선관위는 보고자료를 보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위해서 감시단속반을 위원회 직원과 신고제보요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보고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러한 방법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역선관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곳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지금 인터넷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가기관 중 선관위만큼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한 곳은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선관위의 부정선거운동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다면 선거감시체제는 훨씬 더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 그곳에 법령과 제보창구가 있다고 하지만 아마도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지역선관위의 홈페이지가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도 선거관련 법령만 게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례별 검색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일이 법령을 읽어보고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기 참 곤란합니다.

심지어 본 위원처럼 선거를 직접 치뤄 본 경험자도 어떤 것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선거법이 까다롭고 복잡한데 따라서 보통시민들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급 지역 선관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

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在珪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在珪委員** 柳在珪 위원입니다.

국회 재·보궐선거일과 관련해서 하나의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로 먼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재·보궐선거일은 10월에서부터 3월 중에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4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4월부터 9월 중에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월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 보궐선거 등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 바 실제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잔여임기의 기간개시시점을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가 아닌 선거일로부터 1년 미만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동의합니다.

선거법개정문제에 관련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지난 5월9일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 의견에 대해 본 위원은 선관위가 일선에서 그동안 각종 선거를 관리해 오면서 우리 나라가 선거와 관련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잘 제시했다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역감정의 선거이용규제에 관련해서 선관위의 입장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고질적 병폐인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없애기 위해서 지역연고 등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여론조사 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씨족별 지지도를 공표 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권자의 출신지역별 인구수나 인구분포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였고 각종 법정선거홍보 때 후보자나 가족의 본적지, 출생지, 성장지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선관위 주장에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후보자의 혈연 또 지연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혈연, 지연에 대한 정보도 밝히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거 30일전 정부업적찬양·비방금지 와 관련해서 선관위 측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물이나 신문방송의 광고를 이용해서 정부업적을 찬양하거나 비방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정부홍보는 비판이든 또 홍보든 둘 다 정치적 행위인데 이것을 법으로 규제한다고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정책비판과 비방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해서, 셋째로는 법인세 1% 기탁금 전환과 관련해서 선관위 측은 정치자금의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조달을 위해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법인 중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의 납부세액의 1%를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하였는데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낸 8,000여개 안팎의 기업이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낼 경우 600억원에서 700억원이나 되며 이는 지난해 기업들이 정당과 정치인 후원회에 낸 후원금과 비슷한 액수이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낼 돈을 법인세의 1%로 대체해 양성화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조세를 없애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 방법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 국민정서와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채택한 국가도 없는데다가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가 줄어들지 의문인데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한 선관위의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당법 개정과 관련해서 선관위의 입장은 공직선거 후보자와 중앙당 및 당지부 대표자를

선출할 시 입후보예정자가 복수로 될 경우 중앙당이나 지구당이 당원총회나 다른 대의기관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총재가 위에서 낙점하는 공천이 아니라 경쟁자들끼리 경선을 통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상향식 공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당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된 당내 경선이 지나친 경쟁을 낳았으며 일부에선 중앙정치권에 필요한 인재보다는 지역 토호세력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관위의 역할을 넘어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후보자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정당자율에 맡겨야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당의 자율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장기거주 외국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해지역에서 지방세의 납부의무, 자치법규의 준수 의무, 자치단체의 결정·명령 등에 복종할 의무 등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118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문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입법정책상의 과제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거주자격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권 및 이와 관련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정치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문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선관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나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柳在珪 위원님께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장제201조1항에 대해서 개정동의안을 발

의하셨지요?

○柳在珪委員 예.

○委員長 李龍三 그 내용은 ‘재·보궐선거 등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 이것을 ‘선거일로 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柳在珪委員 예.

○委員長 李龍三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柳在珪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선관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보궐선거 일이 종전에는 사유가 발생되면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하는 바로 며칠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다가 지난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1년에 두 번씩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궐선거사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면 종전에는 선거를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선거를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10월 하순경에 이번에 보궐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원되면 10월 하순에 보궐선거를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임기가 6·7개월밖에 안 남는데 보궐선거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종전의 법과 같이, 한번 보궐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1년 이상 재직시킨다는 그런 정신에 맞춘다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 보궐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잔여임기가 있을 때만 보궐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개정 의견 속에도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李龍三 선관위의 개정의견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委員長 李龍三 아까 여야 위원님들하고 선관위 하고 잠깐 밖에서 이 부분을 의논을 하시더라구요. 이것이 아마 내년 지방선거가 5·6월에 예상이 되는데 금년 연말쯤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해야 되고 또 선거법의 취지가 1년 정도는 그래도 임기가 남아 있으면

선거할 가치가 있는데 몇 달 놔두고 또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아마 선관위에서 이 안을 개정안으로 내놓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을 정치특위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특위가 해산이 되어서 재구성이 안 되어서 행자위원회로 법안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선관위가 이 안을 내놓은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물론 적용이 되겠지만…… 이것이 만약 처리가 안 되면 이 법안 개정의 취지가 사라지고 만다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행자위에서 이 부분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위원회대안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어떤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한 분이 동의를 하는 형식으로 하고 선관위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鄭文和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文和委員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개정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李龍三 그러니까 법안을 의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대해서 법안소위에 회부를 하면 여야 법안심사소위원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지 않겠어요?

○鄭文和委員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위원회대안으로 해보는 것이고 타당성이 정 결여되면 일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鍾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熙委員 朴鍾熙 위원입니다.

지난해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선관위가 교육감선거관리를 위임받아서 그동안 서울, 충남, 전북, 경기 등 7개 지역 교육감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혼탁선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행위가 빈발하고 불미스럽게도 일부 지역에서는 선관위 직원마저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특정후보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

나 검찰수사를 받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출마후보의 현직유지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이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자초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101건에 이르는 공무원 선거개입사례가 이를 반증합니다.

현행 초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별 학부모회에서 선발된 학부모위원, 교직원회의에서 선발한 교육위원, 학교 소재지 생활근거나 사업활동을 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사업자를 학부모위원이나 교육위원으로 추천받아 무기명투표로 선발하는 지역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했을 경우에 교육행정공무원들이 교육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안에서 차지하는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우려가 높아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9일입니다. 내일 실시되는 대구인천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대구시선관위가 투표권을 지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562명에 대한 직업분포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24.3%인 137명이 현직 교육행정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 중립의무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정치운동금지조항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선관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지난해 7월부터 교육감선거관리를 위임받은 이후에 8개 시·도에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상 상충되는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결과적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방치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그간 어떤 개선노력을 해왔는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내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이나 공무원법상 명백하게 공무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행정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고 교육감 출마후보에 대한 공직사퇴명시규정이 없는 것은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여타 공무원과 차별화된 특혜소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덧붙여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전북교육감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선거개입에 따른 조사결과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월드컵기간과 겹쳐서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선거일 조정에 따른 단체장의 임기공백이나 월드컵 준비상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논란도 있고 있습니다.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선거일을 앞당기거나 현행법대로 실시한다 해도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선거에 재도전할 공산이 높기 때문에 제한적이겠지만 월드컵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 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것은 100년 이내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방선거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이해득실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선거일 재조정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4월26일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28.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6·8재·보궐지방선거 당시 21%나 10월26일에 있었던 재·보궐지방선거 투표율 25%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지역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표율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동안 경품을 제공하는 방안 혹은 현수막 게시 허용이나 투표시간 연장과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표율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투표율이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선거의 유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선관위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의 과열대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관위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올 들어 6월 현재 516건이 적발됐고 전체 63.2%가 기관홍보지나 지역홍보매체를 이용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행위도 18.2%를 차지합니다. 먼저 지난 98년 지방선거나 지난해 16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장·차관과 같은 고위공직자들이 앞다투어서 지방순시에 나서고 각종 지역개발공약을 남발했습니다. 사실상 제재 없는 사전선거운동, 공직을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당시에 자제를 촉구하는 협조의뢰수준의 그런 대책을 했지만 효율적인 선거관리주체로서 조치가 대단히 미약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올 들어 5월말 현재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홍

보물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사전선거운동사례가 광역 6건, 기초 66건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정한 룰을 확립할 대책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선관위가 업적홍보규제방안으로 자치단체보고회나 단체장관련내용의 홈페이지 게시를 금지하고 선거일 30일전부터 정부업적 찬양 및 비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秋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秋美愛委員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내셨는데 정치자금법 개정의견과 관련해서 선관위는 대선·총선·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자금관리인을 두고 이를 선관위에 신고토록 했습니다. 후보자의 모든 자금은 정치자금관리인을 통해서만 하고 정치자금관리인은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 시에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방안으로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이번 정치개혁특위가 다시 열린다면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인세기탁의무제 즉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납부세액의 1%를 의무적으로, 3억원 미만 법인은 1% 이내의 범위내에서 임의로 정치자금을 기탁하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아마도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같은 고육책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법인세기탁의무제를 도입하면 정당의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이나 또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폐지됩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秋美愛委員 그러면 정당이 현행처럼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도 받고 또 기탁금도 받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秋美愛委員 지금 정치권에서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또는 어느 특정정당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정당에 대해 국

민이 기대하는 정치의 생산성, 정치의 효율성 이런 것을 볼 때 현재의 정치가 안 돌아가는 것이 돈이 부족해서 안 돌아간다 이런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방안을 생각했습니까?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후원회를 폐지하는 것도 아니면 결국 현실적으로는 기업에 대해서 이중부담을 주는 하나의 준조세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거든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문제는 정치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정치자금이 지금 과다하게 소요되느냐, 적정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단 별론으로 하고 현재 문제되는 것이 정치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균형성 문제나 정치자금조달의 합법성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합법적인 조달을 위해서 그것을 제안했던 것이고 지금 이중적인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인세 1%를 낸다고 해서 불법적인 자금을 여전히 안 낼 것이냐 하는 문제때문에 이중적인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치자금을 1%를 낸 법인은 후원회에 일체 정치자금을 낼 수 없게 한다면 그리고 다른 데 정치자금을 내면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모든 정치자금 제공 자체를 불법화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한다면 정치인들이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거래가 된 것만 나타나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면 자기의 정치생명을 기업에 맡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결국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秋美愛委員 그것은 우리 선관위 쪽에서 지금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거나 정당을 불법단체로 보기 때문에, 불법선거자금에 또는 불법정치자금에 의존하거나 정당과 특정정치인이 다 그렇다고 애초부터 죄인으로 취급하니까 그런 것이지 지금 개인은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 불필요한 정치자금은 될수록 쓰지 않고 절제하고 꼭 필요한 데에만 쓰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또 선거법이 모든 행태를, 돈이 되는 행태를 많이 금지하고 있고 또 선거사범 단속이 엄정하고 그 재판결과도

보시다시피 재·보궐선거가 판판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엄격하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에, 정치에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어야 되느냐, 국민적 동의를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정치인도 그렇게 죄인이 아니고 정당도 그렇게 죄인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불법정치자금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고 오히려 후원회가 양성화되고 개인과 정당이 후원회를 연중 열 수 있고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지지를 해주는 후원회사가 있는 사람만 많이 모집한다면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뗏뗏하고 양심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모든 정치인이 기업과 불법한 유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무슨 법인세를 도입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정치가 그런 불법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면 물론 법인세 1%가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정치자금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규모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면 이런 제도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냐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秋美愛委員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정당이 범죄집단이 아니에요.

지난 번 총선이 있을 때 여야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 얼마 주셨어요? 선거 끝난 후에 금년에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내려갔어요? 수백억씩 쓰고도 그 돈이 모자라서 정치활동이 안되니까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자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 범죄시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또 돈이 부족해서 정치가 안된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고 여야의 정치자금에 균형을 맞추어준다는 것인데 그 균형은, 오히려 만약에 어떤 특정정당이 그 정당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자금을 많이 걷는다든지 하게 되면, 후원금을 많이 걷는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표로 국민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균형은 국민의 심판으로 또는 국고보조금 이런 것으로 어지간히 맞추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역대 과거 정부와 이 정부를 비교해 볼 때 여야 밸런스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되었다, 여야 균형을 잡아주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편차가 제가 없다고 무시하는 것

은 아닙니다.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과거 정권에 비해서, 과거 지정기탁금제가 있었을 때 또는 정경유착이 심해서 정치자금을 독식해 왔다든지 할 때에 비해서 보면 지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많이 완화되었고 오히려 야당이 의석수가 더 많으니까 국고보조금면에서는 다만 100억이라도 더 많이 받고 선거 때 더 풍족하지요.

그리고 그런 것이 차츰 완화되어가는데 새삼스럽게 모든 정치인과 정당을 돈이 모자라서, 또 어딘가 기업과 불법자금으로 유착해서 정치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이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정치를 더 불신하게 되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정치자금법도 고치고 여러 가지 몸부림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반대방향이 아니겠느냐, 정당은 돈 먹는 하마다, 돈을 자꾸 갖다주어야 된다, 갖다주는데 그것도 골고루 나누어먹게끔 나누어줘야 된다는 논리밖에 결국은 안되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업적에 대한 홍보·비방제한관련금지입니

다. 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일 3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전물이나 광고를 이용한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비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제한적으로 누구든지 막연하게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비방을 할 수 없게 되면 상시적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업무추진상 계속적으로 홍보해왔는데 선거가 있다고 해서 ‘누구든지’라고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공무원이 정책계도나 홍보, 행정지도 이런 것을 갑자기 중단해야 됩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중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李龍三 위원장, 閔鳳基 간사와 사회교대)

○秋美愛委員 아니, 그것이 선거를 염두에 둔 억지의 일부러 하는 홍보가 아닌 이상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왔고 국민들로부터 정책이해를 얻어야 되고 계속성이 있는 것이고……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여기에서 홍보금지는 모든 홍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고행위만 금지시킨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라고 한 것은 실지로 정부나 정당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제3의 단체, 제3의 개인,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 경험을 해봐서 아시겠습니까마는 대통령선

거가 되면 수많은 가공단체들이 많은 광고행위를 합니다. 그것이 선거법상 재단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광고를 내면 선거법상 현재로는 선거운동까지만 안 이룬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주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이 여당을 비판한다든지 또 여당이 야당을 비판한다든지 또는 정부가 자기업적을 국민한테 알리는 것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 기본목표가 아니라 제3의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선거 때 수없이 나타나는 그런 각종의 광고들이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秋美愛委員 아니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누구든지라는 그러한 막연한 것을 거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떤……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조문에서는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조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당사자라든지 또 정부에서도 특별히 필요할 때, 현안이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또 필요하겠지요. 조문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秋美愛委員 조문상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秋美愛委員 그 조문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秋美愛委員 그리고 그것이 어떤 허위사실이거나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꼭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대통령선거를 한다면 현정부의 어떤 각각의 업적에 대해서 그것이 허위든 아니든, 허위에 관계없이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선거 때 신문광고라든지 TV광고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선거당사자들의 싸움이 아닌 제3자가 나섰을 경우에 견잡을 수 없이 선거분위기가 바뀝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조문의 기본취지입니다.

○秋美愛委員 그 취지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아까 얘기한 어떤 목적을 깔고자 하는, 결국은 제3자라고 하지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세력과 집단을 이용해서 터무니없는 비방을 해대면서 선거를 흐린다는가……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터무니

없다 하지 않더라도……

○秋美愛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민주국가잖아요. 민주국가는 어떤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선거 때는 관심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더 열심히 활발하게 하는 것이 그것 못하게 한다 그러면 더 역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저희는 당사자끼리는 하라는 것이지요. 여야 간에 또 후보자들끼리는 하는데 선거와 관계없는 제3자가 나오는 것은 막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정파가…… 완전히 불공정의 표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秋美愛委員 구체적인 조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봐서는 잘 말씀드리기가……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秋美愛委員 그다음에 선거인명부 보안문제 뉴스 한번 탔지요? 공익근무요원이 명부를 PC에서 빼내 가지고 어떤 이벤트회사에다가 회원으로 무더기 가입시켜 가지고 선거인명부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것이 한번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 보안을 좀더 철저히 할 대책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구하겠고요.

그다음에 선거인명부를 후보자한테도 주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이 정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년월일도 빼버리고 생년 정도만 하고 개인정보는 가급적 외부에다가 적게 주는 것이 낫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공감을 합니다마는 원인은 선거권문제때문에 필요한데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없애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秋美愛委員 그러면 뒷 번호 자체를 지우고 준다는지 그래서 어떤 지역색을 이용한 선거 이런 것에 대해서 가급적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閔鳳基 秋美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權泰望 위원 질의하시지요.

○權泰望委員 權泰望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 속에서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주신 선관위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선관위 개정의견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면 지역감정을 선거에 악용하는 풍토를 쇠신하기 위해 지역별 지지도 공표제한, 출신지별 인구분포 공표제한, 출신연고를 적시한 선거운동제한 등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감정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에서 이런 공여지책을 통해서라도 지역감정조장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선관위의 의도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지역감정을 선거법 조항만으로 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그 실효성조차 의심스럽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각종 향우회라든지 동창회 등의 모임이나 인터넷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후보자의 출신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현실에서 출신연고를 적시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무총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제안들이 지역감정해소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선거구안의 극히 한정된 선거구민에게만 이익을 주는 사업공약공표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극히 한정된 선거구민에게만 이익을 주는 사업공약공표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극히 한정된 선거구민에게만 이익을 주는 사업공약이라는 규정 자체가 너무나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선심성 공약은 선거법에 명시하여 제재할 사항이 아니라 해당 유권자들의 정치의식과 판단력에 맡겨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 외에서의 집회개최나 단체의 기관지 등을 1회 이내 발행 배포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대 총선과정을 통해 확산된 시민단체 등의 선거개입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일부단체의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무분별한 낙천·낙선운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진 근거 없는 흑색선전 및 후보자 비방에 대한 선관위의 대책을 묻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피해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급조된 단체 등은 낙선운동을 할 수 없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단체의 자격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흑색선전은 그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의 명백한 반론이 제기된다하더라도 해당후보자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할 때 일부 단체에 의한 무책임한 흑색선전과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사전사후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급조된 단체는 낙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우리 나라 시민단체 현실을 볼 때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평소 실제활동은 거의 미비하고 극소수의 회원으로 단체의 이름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즉 설립은 되어 있으나 활동은 하지 않는 이름뿐인 단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선거에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이런 이름뿐인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다면 단체를 급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이렇게 된다면 급조된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등록자격과 기준 등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후보자들 간에 시비가 끊이지 않고 매번 선거가 끝나면 구체적이지 않은 사소한 사안들로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져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정치적 무관심을 낳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거문화를 법으로만 바로 잡겠다는 것은 지나친 과욕입니다. 제대로 지켜가지 못할 법을 만들어 도리어 선거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드는 것보다 불필요한 규제나 모호한 규정들은 과감하게 정리



해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거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선거문화 발전의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선관위에서 보다 충실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閔鳳基** 權泰望 위원,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宋錫贊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委員** 宋錫贊 위원입니다.

먼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서 남다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재·보선선거를 원만하게 관리하고 또 그밖에 교육감선거 및 공공단체 선거에도 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13일 선거 당시에 정부에서 지원한 국고지원금을 회계보고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야 지구당 회계책임자들을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야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까지도 지구당 회계책임자를 선거 회계책임자로 착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당황해 했었고 또한 국민들뿐만 아니라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회계를 보고함에 있어서 대부분이 지구당 별로 실질적으로 선거업무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보고하기 쉽게, 나름대로 편리한 대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고발을 당했었고 또한 이러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지구당의 회계책임자들이 무혐의 아니면 벌금형을 받고서는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지구당 회계책임자는 선거회계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락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판사의 견해를 밝히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판사의 견해처럼 지구당 회계책임자하고 선거관리 회계책임자하고 별도로 보고 있

는지 아니면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는지 유권해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무슨 자격으로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당선무효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선거법에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회계책임자가 선거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그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의 선거사무장이라든지 회계책임자는 저희는 신분범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아닌 자격으로 그러니까 선거비용지출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의 신분으로 그러한 불법행위를 해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사유가 아니고 선거의 회계책임자 자격으로, 선거의 선거사무장 자격을 취득한 이후 그 자격으로 위반해서 처벌을 받았을 때 당선무효가 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공식견해입니다.

○**宋錫贊委員** 그러면 지구당 회계책임자로서 벌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지구당 회계책임자 자격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선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宋錫贊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회계보고한 것은 지구당 회계책임자의 신분으로서 회계보고한 것이거든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것은 저희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구당 회계책임자와 선거 때의 회계책임자 신분이 같은지 다른지 또는 지구당 회계책임자가 보고를 하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선거비용이고 결국은 선거의 회계책임자가 책임질 사항이라면……

(閔鳳基 간사, 李龍三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판결을 할 때 어디다가 책임을 물었느냐에 따라서 당선무효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적시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宋錫贊委員** 대부분의 지구당이 지구당 회계책임자와 선거의 회계책임자가 동일인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지구당 회계책임자를 선거 회계책임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것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구당 회

계책임자는 평상시에 죽 자격을 가지고 있고 선거비용의 회계책임자는 정식으로 후보자가 등록된 후부터 선거비용 회계책임자로 선임이 됩니다.

그러면 선거비용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 그 자격으로 불법행위를 했느냐 아니면 지구당 회계책임자의 자격으로 불법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당선무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宋錫贊委員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나중에……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鳳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鳳基委員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2002년 지방선거일조정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실시되는 제3회 동시지방선거 일정과 관련하여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께서도 내년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5월31일부터 6월말까지인 2002년 월드컵기간 중에 치르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도 연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치권, 시민단체, 국민 모두의 관심사항이고 선거일 조정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5월29일 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3.1%가 월드컵기간 중에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선거일 변경은 지방선거당선자의 임기가 7월1일부터 개시되어서 선거일을 뒤로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선거일을 지나치게 앞당기는 것은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1개월 정도 앞당겨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6월14일 행정자치부 질의에서도 선거일 조정과 관련하여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현행법대로 6월13일 개최하는 것과 한달 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답변을 했으며 현행법상 선거일에 실시되는 것이 선거행정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했고 금년 정기국회까지 조기 실시 여부를 정치권에서 결정하면 정부는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사무총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일 조정과 관련 당정협의회, 행정자치부와 의견교환을 한 사실이 있는지 또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법대로 6월13일 실시할 경우 월드컵경기로 인한 선거관리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선관위에서 파악한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월드컵 개최 1개월 전에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장단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투표율이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선관위의 견해와 대책, 예상 투표율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월드컵 분위기로 인해서 선거쟁점이 희석되고 선거 무관심으로 인하여 후보선택의 기회가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월드컵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탈법선거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 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16대 대통령선거를 반년 앞둔 2002년 지방선거는 출마후보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집계에 따르면 98년 6·4지방선거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1,040건이라고 하는데 이는 95년도 796건, 98년도 428건과 비교할 때 사전선거운동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자치단체장들은 직권을 남용하고 업적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장들의 이러한 사전선거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선관위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차단을 위해 유관단체 즉 행정자치부라든가 경찰 등과 협의한 사실여부와 합동감시체제 강화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관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忠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兆委員 선거범죄 포상금제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16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유권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불한다 해 가지고 이행을 해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기능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가지고 일종의 사행심을 조장시켜도 되겠느냐 하는 비판도 있지만 선거부정에 대한 단속은 강하면 강할수록 공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감시·감독은 그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볼 때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동안 선관위의 기능이 많이 강화되고 인력도 증강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시·감독기능이 한계가 있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가치평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권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신고나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미흡하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거양되는 성과는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이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선관위가 어떤 사전절차를 갖고 시행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보면 16대 총선의 경우 선거법 위반사례 적발·조치건수는 3,017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적발사례 건수 대비 2.6%에 해당하는 78건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들이 신고·제보한 1,044건에 대비하면 7.5%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낮은 것인지, 제 일차적 원인은 홍보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관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홍보 강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방안이 마련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가 여러 가지로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시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신고꾼도 발생하고 해서 상당히 역작용도 발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위반 발생건수는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도의 경우 시행 80일 만에 100만건에 가까운 93만1,547건이 접수되었습

니다. 그런데 선거범죄 포상금제도의 경우는 선거법이 원체 난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할 것인가 하는 그 절차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왕에 도입된 제도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홍보기법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국민들이 일시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활용함으로써 포상금도 타고 공명선거도 확보해 나간다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홍보방안이 강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에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 이 제도의 긍정적인 점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점은 무엇인가, 후유증은 무엇인가,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 진단해 본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난 4월에 치렀던 재·보궐선거에서는 한 건도 신고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홍보 부족, 계도활동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비중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도를 전시성으로, 일회성으로 반짝 하고 말 그런 작심으로 시작한 것인지 그 내부적 의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할 경우에 뭐니뭐니 해도 신고자 보호를 강력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방법에 있어서나 모양에 있어서 아주 미묘한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남을 흠집내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역작용이 예상외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사범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앞으로의 보완책과 적극적 홍보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1년 이내의 선거범죄, 공범 등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종결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도 이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0년2월16일 선거법을 개정할 때 이것을 넣었는데 보니까 이것이 초등학생한테 하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강행규정이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타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을 선고한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金忠兆委員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문화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속전속결로 끝나지 않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 후유증이 발생하고 이 정치적 후유증이 자꾸 누적되니까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가중되었습니다. 이것도 이 요인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사법부가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명시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金忠兆委員 왜 안 해요? 법원에서 얼마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까? 제3자나 외국사람들이 이 규정을 보면 대한민국 법원이 얼마나 임무 해태를 하길래 법규에 이렇게 규율하고 있느냐라고 볼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동감입니다.

○金忠兆委員 그러면 당연히 헌법상 비록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지위는 선관위가 높지만 그 높은 지위에 상응하는 만큼의 기능이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물론 외부 여건 때문에 그렇지만 당당하게 이것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 요청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법원에서 1년 이내에 법규정대로 판결을 안하고 있는 것이 모르고 안하고 있다든지 일부러 안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주무기관인 저희로서 그런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원에서도 명시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아는 바에 의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피성으로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兆委員 해보지도 않고 무슨 면피성이다 아

니다 미리 그렇게 규정을 해요. 법원은 그래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어떤 면에서는 최종적인 것이고 가장 높은 것이예요. 그래서 이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하여 신속하게 또 반드시’ 이런 규정까지 동원된 것은 우선하여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아까 무슨 증거포착하고 뒤집어보는 데 시간이 걸린다, 다른 사안 제쳐두고 우선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또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아닙니까? 정중하게 사법부에 가까운 시일 내에 요청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忠兆委員 보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이 틀렸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말하더라도 그러고 해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알았습니다.

○金忠兆委員 정치자금관계법개정의건 이것 5월에 만들었습니까? 이것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었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 행사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올려 드렸습니다.

○金忠兆委員 그래요, 나는 오늘 이것 처음보는데 하여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秋美愛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지정기탁금제도 규정한 것을 자세히 보니까 기탁을 하게 했으면 되었지 무슨 또 지정기탁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과거에 지정기탁금의 병폐가, 나는 이것 딱 보고 모골이 송연해져요. 우리 총장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래서 지난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거기에다 두었습니다. 100% 특정정당에다 지정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金忠兆委員 이 지정기탁금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얼마나 과거에 야당이 천신만고 고생했고 또 선관위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래 놓고 무슨 지정기탁금제가 또 나와요. 그냥 기탁이면 기탁이지. 확정된 것이지만 내 개인적인 뜻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구체적으로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忠兆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시겠어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지요?

○委員長 李龍三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6시10분이니까 6시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龍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염려와 질책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元昌 위원님께서 위장전입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宗雨 위원님께서 먼저 해외부재자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 해외부재자문제가 진작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공관장 책임하에 투개표를 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외국은 거의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 만약 그렇게 했을 때에 공관장들의 중립성문제라든지 신뢰성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과 그런 선거권을 보장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다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사에 예산지원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예산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관계법률과 관련해서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감독부서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선 후에 재출마하는 문제는 물론 선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권자가 해결할 문제다 하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제도적으로 그것을 아주 금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더 연구를 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개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李秉錫 위원님께서 선심성 예산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서면으로……

○委員長 李龍三 안계신 위원님들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全甲吉 위원님께서 선거사범 재판기일 엄수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미처 답변을 못드린 것 중의 하나가 선거사범을 사실 1년 이내로 규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촉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제도적으로 한다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불출석했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또는 선거사범에 관한 한은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형사소송제도의 개정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감정문제는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俞成根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忠兆 위원님께서 신고제보자의 신분보장문제를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金忠兆委員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개정의견에서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柳在珪 위원님이나 秋美愛 위원님 그리고 權泰望 위원님께서 실효성이 있느냐,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웠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나라 선거에 지역정서문제가 엄청난, 선거의 본질 자체를 부인하게 될 정도로 지금 심화되어 있다는 이런 측면과 결국 그것이 법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가지고 금시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

런 심각한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손을 놓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역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내년도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를 생각할 때 모든 것에 지역정서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시 대두될 것이라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지역감정문제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만이라도 피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도움되는 것이 아니냐,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하는, 어떤 면에서 아까 우리 權泰望 위원님께서 교육지책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교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마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적어도 다음 선거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내면서 실무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적어도 호남, 영남, 충청 이런 소리 안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지책이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柳在珪 위원님께서 정당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정당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정당의 현실문제와 또 그것에 따른 부작용문제 이런 것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정당의 민주화문제라든지 후보자공천의 민주화 문제는 현실의 어려움을 고려를 하면서 그래도 그 쪽으로 나가야만, 이것은 선거의 공정성문제, 돈 안드는 선거문제, 정당의 민주화문제 이런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의 내부규율에만 맡길 것은 아니고 가능하다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라도 해서 개선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朴鍾熙 위원님께서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교육감선거를 우리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아졌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선거인으로서 직접 선출하는 학교운영위원이 되는 문제 이것은 현직 교육감이 임명한 사람이 결국 선거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직 교육감이 선거기간 중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거를 관리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현직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 외의 일로 저희들이 규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해서 이다음 선거부터는 법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朴 위원님께서 교육행정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선거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적 중립의무라든지 정치관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교육감을 선거하는 투표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는 문제 또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문제 특히 학벌, 출신학교에 따른 여러 가지의 병폐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일 조정문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秋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거인명부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權泰望 위원님께서 특정지역을 위한 사업공약의 공표제한과 관련하여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애매성 문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단지 이것을 한 것은 법문상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한정된 선거인이라든지 한정된 통·리 또는 어떤 학교, 회사, 조합, 단체 이런 데에 특정되게 이익을 주는 공약들은 결국 말이 공약이지 그 단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 규정을 일단 생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權泰望委員 잠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또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세세한 것까지 법률적으로 근거해서 그것의 처벌 규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몰라도 이런 문제로 해서 국회의원의 당락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위한 사업공약의 공표제한에 대한 처벌규

정을 어떻게 정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權泰望委員 후보자가 했을 때, 배우자가 했을 때, 이런 것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가능한 한 서로 다툼이 없게끔 하는 것이 좋지 이 문제 때문에 선거소송에 휘말려서 서로간에 낭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큰 문제, 어떻게 보면 지역감정에는 큰 것이에요.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소하게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지 말아라, 규제일변도로 간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그리고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개정의견을 낸 것은 지난번과 같이 일반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낙선운동이라든지 당선운동은 여전히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구성원내, 예를 들자면 어떤 단체가 특정후보를 위해서 당선운동을 한다면 같은 구성원끼리는 서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길을 터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개정의견을 낸 것은 그 부분입니다.

일반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구성원끼리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한다면 환경단체 회원들끼리는 어느 후보가 친환경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선에서 회보를 낸다든지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개정의견을 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단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 판결들도 속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엄격히 대항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閔鳳基 위원님께서 월드컵 시기와 관련된 선거 기일조정문제를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朴鍾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은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하여튼 언제 하든 간에 관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장단점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것이 더 좋으나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물론…… 그것만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보기에 여야간에 이 문제가 워낙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저희가 관리하는 데 현저히 지장이 있다면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은 월드컵 기간 중에 하든 그전에 하든 관리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관리기관에서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차질 없이…… 아까 염려하시는 것처럼 투표율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閔鳳基委員 그런데 선거관리 하는 데 있어서 월드컵 기간 중에 하는 것하고 월드컵을 피해서 한 달 당겨서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있습니다.

○朴鍾熙委員 투표율 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투표율은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저도……

○朴鍾熙委員 그러니까 월드컵 기간 중에 선거하는 것하고 그 전에 하는 것하고 투표율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것이 월드컵 기간 중에 하는 것이 더 낮을 것이라는 추론에 대해서 반박할 근거를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표율때문에, 투표율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검증이 안된 상황에서 법에 정해진 날짜를 또 바꿀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역시 같이 남습니다.

○閔鳳基委員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선거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달 당기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다 아니면 현행대로 그냥 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

런 양쪽 의견을 가지고 장단점이 비교가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어떠한 하는 얘기에요.

한 달 당기자,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대립에 대해서 어느 쪽을 택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그래도 어떤 것이 낫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그런 검토가 있었을 것이 분명하는데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첨예한 정치적 대립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안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검토결과였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閔鳳基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李元昌委員 이왕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방선거를 치르고 바로 6개월 뒤에 대선에 들어가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렇습니다.

○李元昌委員 그러면 선관위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치르느라고 그렇게 또 불철주야 애를 썼다가 바로 6개월 후에 대선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어때요? 한 달이라도 앞당겨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더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때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런 차원에서는 당겨서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실질적으로는 저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 금년 후반기부터 실질적인 대통령 선거전이 이루어지리라고……

○李元昌委員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런데 본격화될 때 또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봐서도……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렇다면 지방선거에 묻혀서 같이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도 역시 함께 듭니다.

閔鳳基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질의하셨는데 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중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선거사범 단속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찰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

있습니다라는 적어도 선거사범 단속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문제와 관련해서 좀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협조를 안하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만약에 협조가 되면 또 간섭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閔鳳基委員 사전협의라든가 협조체제를 구축을 안 해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꼭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협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독립성문제라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협조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협조체제를 구축해서까지 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좀 소홀하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라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委員長 李龍三 다 하신 것이예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포상금문제는 아까 서면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委員長 李龍三 다 마치신 것입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委員長 李龍三 더 답변을 들으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元裕哲 위원, 尹斗煥 위원, 金玉斗 위원, 鄭文和 위원, 李康來 위원, 陸堯相 위원, 鄭昌和 위원, 李秉錫 위원, 閔鳳基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선관위의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가고 많은 선거가 있음으로 해서 선관위 업무가 날로 증대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최근 교육감선거를 전담하고 있으며 농·수·축협·인삼업·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까지 관할해 두고 있는 상황하에서 중앙선관위 및 일선 선관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와 또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성숙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히 내년의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이 시점에서 선관위의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더욱더 사명감을 갖고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관위는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크게 애를 써주셔야 할 것이며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엄정한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모두 우리 정치발전과 선거문화발전을 위해서 선관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업무와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가 있고 오후 2시에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出席委員(22人)

權泰望	金玉斗	金龍煥	金忠兆
陸堯相	閔鳳基	朴宗雨	朴鍾熙
宋錫贊	元裕哲	兪成根	柳在珪
尹斗煥	李康來	李秉錫	李龍三
李元昌	全甲吉	鄭文和	鄭文和
秋美愛	河舜鳳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朴奉國
입법심의회관	文濟豐

○政府側參席者

행정자치부

장	관	李根植
차	관	丁榮植

차관보	趙永澤
기획관리실장	金範鎰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安載憲
인사국장	李星烈
행정관리국장	金榮浩
자치행정국장	金之淳
지방재정세계국장	金住炫
민방위방재국장	文元京
소방국장	申珠暎
의정관	崔良植

경찰청

차장	崔圻文
경비교통국장	徐載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任左淳
사무차장	李勳相
선거관리실장	丁一桓
기획관리관	安基奭
정당국장	洪淳斗
선거관리관	任明宰
홍보관리관	李圭鍵
선거연수원장	吳璟華

○其他參席者

새마을금고연합회

회장	柳塔相
----	-----

【報告事項】

○議案回附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설훈의원 발의)

(6월15일 설훈의원 외 20인 발의)

6월16일자 회부됨.